

생계비계좌특약

제1조(약관의 적용) 생계비계좌(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제2조(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저축예금, 보통예금으로 합니다.

제3조(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서 연령에 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② 이 예금의 가입은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합니다.

③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계좌 해지 전에 이러한 제한사항(해지 후 당월 재개설 불가)을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4조(입금제한) ①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을 제한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합니다.

제5조(거래제한) ① 이 예금은 저축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②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이 예금은 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이 예금은 만기 시 원리금 자동입금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제4조에 따른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결제·납부 부족금액 또는 결제·납부취소 초과금액을 별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6조(이자율적용 및 이자결산방법) 이 예금의 이자율적용 및 이자결산방법은 「저축예금특약」,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을 따릅니다.

제7조(비과세종합저축)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 칙<2026.1.20.>

이 약관은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